

# 定 款

(2013년 3월 22일 현재)



#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대상주식회사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DAESANG CORPORATION (약호 DAESANG CORP.)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2. 고기, 수산물, 과일,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3. 동·식물성 유지 제조업
4. 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제조업
5. 곡물 가공품 제조업
6. 전분 및 당류 제조업
7. 사료 제조업
8. 빵류 및 곡분과자 제조업
9. 설탕제조, 코코아제품 및 설탕과자 제조업
10. 국수, 라면 및 유사식품 제조업
11. 커피, 차류, 수프 및 균질화식품, 두부 및 유사식품,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등 기타 식료품 제조업
12. 주정, 증류주 및 합성주, 발효주 및 탁주, 맥아 및 맥주 제조업,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13. 비알콜성 음료, 얼음 및 먹는샘물 제조업
14.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조경수식재 및 농업·축산업관련 서비스업
15. 인공씨감자 등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16. 과일,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등 재배업 및 시설작물재배업
17. 관광농원 및 부대서비스 운영업
18. 영림업 및 임업관련 서비스업
19. 어로 어업, 양식 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20. 가죽 제조업
21. 기초 유기·무기화합물 제조업
22.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3.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4.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5. 의약품, 기타 화학제품, 의료용기기 제조업
26. 도료, 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7. 비누, 세정광택제 및 화장품 제조업
28. 기록용 매체 및 관련화학제품 제조업
29. 접착제 및 젤라틴 등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30. 화학섬유 제조업
31. 제1차, 건축용, 포장용, 기계장비 조립용 및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33. 일반도자기 및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34. 자동차부품 제조업
35. 지반조성 공사업
36. 토목시설물, 주거·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37. 토목시설물 건설관련 전문 공사업
38. 건물 축조관련 전문 공사업
39.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0. 전기 및 통신 공사업
41. 도장, 도배 및 내장, 유리 및 창호, 기타 건축마무리 공사업
42. 건설장비 운영업
43.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 및 관련 서비스업
44. 석회석 및 점토광업, 석재, 쇄석 및 모래자갈 채취업
45. 자동차 수리업
46. 상품중개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정용품, 건축자재 및 철물, 기계장비 및 관련  
용품, 기타 등 일반도매업
47.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가전제품, 가구 및 가정용품 등 소매업, 종합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등 기타 일반소매업
48.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49. 숙박업 및 음식점업
50. 소포 송달업 및 도로화물 운송업
51. 화물취급업 및 창고업
52. 육상,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 등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3. 부동산 임대, 공급, 관리 중개 및 감정업

54. 자연과학,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55.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 전문 디자인, 광고업 등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6. 의료업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 서비스업
57.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58. 경기장, 골프장 및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9.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 그 외 기타 서비스업
60. 생명공학 관련사업
61.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사업
62. 벤처 관련사업
63. 포장 및 충전업
64. 첨단 아이디어 개발사업
65. 곡물 등 대량생산기술 및 식품조직배양 플랜트 수출입업 및 판매업
66. 화력발전업, 기타 발전업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공급사업
67. 바이오가스 제조 및 공급업
68.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69. 지정외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및 폐기물을 활용한 재생연료 제조업
70. 폐수처리,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업
71. 환경관리시설 운영업
72. 전 각항의 관련사업에 대한 일체의 부대사업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이천오백만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 일주의 금액은 일천원으로 한다.

**제7조(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 “종류주식”으로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일천만주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3%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전환기일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제10조의2(삭제)

- 제10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7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의4(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1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사 채

**제14조(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이천억원은 보통주식으로, 일천억원은 제8조의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제8조의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4장 주 주 총 회

**제17조(소집기간)**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8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5장 이 사 · 이 사 회

**제29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2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2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4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진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3(삭제)** (2012. 3. 23)

**제34조의4(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회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36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7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8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연간총지급액 한도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규정에 의한다.

**제39조(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제6장 감 사

**제40조(감사의 수와 선임)** ①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내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41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42조(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0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3조(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4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5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연간총지급액 한도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7장 계 산

**제46조(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7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의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8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49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0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51조(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에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④ 사업연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52조(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부 칙

1. 이 정관은 주총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1956년 01월 31일 제정	1961년 12월 31일 개정
1963년 06월 10일 개정	1963년 08월 25일 개정
1965년 02월 01일 개정	1965년 06월 15일 개정
1966년 03월 04일 개정	1968년 08월 16일 개정
1969년 02월 20일 개정	1970년 02월 24일 개정
1970년 04월 10일 개정	1971년 02월 24일 개정
1972년 02월 24일 개정	1974년 02월 27일 개정
1976년 02월 27일 개정	1976년 06월 18일 개정
1977년 02월 24일 개정	1978년 02월 24일 개정
1979년 02월 28일 개정	1980년 02월 28일 개정
1982년 02월 25일 개정	1982년 08월 27일 개정
1983년 08월 26일 개정	1984년 08월 28일 개정
1985년 08월 26일 개정	1986년 08월 28일 개정
1987년 08월 28일 개정	1988년 03월 18일 개정
1989년 03월 17일 개정	1990년 02월 27일 개정
1991년 02월 28일 개정	1992년 02월 28일 개정
1994년 02월 26일 개정	1994년 11월 11일 개정
1996년 02월 23일 개정	1997년 02월 27일 개정
1997년 07월 16일 개정	1997년 10월 31일 개정
1998년 05월 11일 개정	1998년 07월 27일 개정
1999년 03월 12일 개정	2000년 03월 17일 개정
2001년 03월 16일 개정	2002년 03월 15일 개정
2006년 01월 06일 개정	2006년 03월 24일 개정
2009년 03월 20일 개정	

2.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제10조 제3항, 제14조, 제14조의2 제3항, 제15조 제3항, 제34조의4, 제36조, 제43조, 제47조, 제50조, 제51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 한다.

3.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